

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은진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이은진 의원 외 5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12. 2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이은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가 추진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“시정 협력 공동주택” 개념을 도입하고,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특례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시정 협력 공동주택”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의2 신설)
-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특례를 규정함(안 제10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“시정 협력 공동주택” 개념을 도입하여,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상가·병원·교회·관공서 등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자 차량을 주간 시간대 공동주택 유희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나. 주요내용으로는 “시정 협력 공동주택”의 용어를 정의하고, 시정 협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,
- 다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 주차장 개방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(2022. 12. 2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임야에 한해 평균경사도 14도 미만으로 허가기준 규정(안 제18조)
-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정비(안 제5조)
- 보조금 지원 및 현장조사 제외대상 정비(안 제10조)
- 영구임대주택등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주기 정비(안 제10조)
-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규모 정비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- 나.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비하고, 보조금 지원 신청시 현장조사 제외대상을 정비하며, 영구임대주택 등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급 주기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,

- 다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(2022. 12. 2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이용운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」 개정사항 및 분과위원회 신설,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수립 등(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)
-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(안 제65조)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(안 제74조의4)
-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규정 개선(안 별표 1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」 개정사항 및 분과위원회 신설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신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나.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, 분과위원회 중 제3분과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,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 관련 정보 등재에 관한 사항,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,
- 다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·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(이용운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2. 7. 이용운 의원 외 6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- 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12. 2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이용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·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 제5조, 안 제6조)
-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(안 제7조)
- 점검반의 구성 및 업무범위(안 제8조)
-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및 반영(안 제9조, 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·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,
- 나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